

# 일본 생활보호법 개정 과정 ( 2012~2014년 ) 에 나타난 부양의무 ——장애인 단체에 의한 비판의 고유성——

리츠메이칸대학대학원 첨단융합학술연구과 나카무라 료타(中村亮太)  
번역: 임덕영

## 들어가며

2014년 7월 1일 「생활보호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약 60년만의 생활보호법 대개정에 해당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강화(법개정으로 40%를 부가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등, 개정 내용은 여러 영역에 걸쳐 있으나 부양의무강화를 둘러싼 규정과 관련해서는 ① 부양의무자에 대한 통지의 의무화(24조 8항), ②부양의무자의 수입·자산 등 보고의 의무화(28조), ③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권한의 확대(29조) 등이 신설·개정되었다.

## 목적과 방법

본 보고는 일본에서 2014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생활보호법」성립과정에서 제기 된 장애인 단체의 부양의무에 대한 비판을 보고한다. 5개 장애인단체의 성명·요청서를 중심으로, 이러한 부양의무 비판이 가지는 논점과, 일반단체인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생활보호문제대책전국회의」의 논점을 비교함으로써, 장애인 단체의 부양의무에 대한 비판의 고유성을 보고한다.

### 일반단체의 부양의무비판

### 장애인단체의 부양의무비판

#### ○ 일본변호사연합회

[2013.5.17「생활보호 이용을 가로막는 생활보호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개정안 24조 8항, 28조 및 29조에 대한 정부답변은, 명백하게 부양이 가능한 매우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취지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신설로 인해, 보호개시 신청을 행하려 하는 요보호자가, 부양의무자에 대한 통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친족간의 알력이나 스티그마(주위의 강요된 부끄러움이나 부정적인 시선의 낙인)을 염려하여 신청을 단념하는 위축효과를 한층 강화시키고, 신청권을 형해화시킬 것은 명백하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 ○ 생활보호문제대책전국회의

[2012.5.15「위법한 「물가작전(水際作戰)」을 합법화하고 친족의 부양을 사실상 생활보호 요건으로 하는 「생활보호법 개정법안」의 철회·폐안(廢案)을 요구하는 긴급성명」]

「본 개정은 지금까지 위법으로 여겨져 왔던 「물가작전」을 합법화·제도화하고, 보호의 요건이 아닌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사실상 보호의 요건화하는, 현행 생활보호법의 근본을 전근대적 복고적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악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활보호를 이용하려는 자의 친족도 또한 생활이 곤궁한 경우가 많으며, 가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관계가 악화되었거나 관계가 소원한 경우가 많다. 부양을 사실상 강제하게 된다면, 생활에 곤궁한 자의 대다수가 생활보호 이용을 단념할 수 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친족간 알력을 악화시키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역자주: 원래 물가작전이란, 상륙해오는 적이 육지에 닿기 전에 섬멸하는 작전을 말한다. 생활보호에서 물가작전은 생활보호 신청을 하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막는 행정 측의 행위를 의미한다.

#### ○ DPI일본회의 [2013.5.27 「생활보호개정안의 폐안(廢案)을 요구하는 긴급성명」]

「다수의 장애인이 부모형제로부터 독립하여 혹은 병원이나 시설을 나와, 지역에서의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생활보호제도를 이용하면서 생활을 꾸려왔다. 그러나 생활보호수급에 관해서는, 부모형제가 강하게 반대를 하거나, 병원이나 시설 생활을 계속 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열심히 부모형제를 설득하고 생활보호 수급을 실현시킨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이 이번 부양의무 강화로 인해 더욱 엄중한 상황이 될 것이며, 장애인 자립을 보다 곤란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상정된다.」

#### ○ 분노하고 있다! 장애인 도외시\*\*! 전국 네트워크

[2012.5.31 「생활보호 부양의무에 이의 제기」]

「우리들 장애인에게 가족은 자주 억압자로서 나타났습니다. ... 장애인은 그 억압을 물리치는 것이 지역자립생활의 첫발이지 않았습니까? ... 「친족의 부양의무」란 생활의 근본을 가족이 쥐게 하는 것이며, 다시 억압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족제도란 고통스러운 억압적인 울림이 있는 단어입니다. 부양의무라는 이름의 쇠사슬에 다시 묶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역자주: 원문은 키리스테(切り捨て)라고 표기되어 있음. 숫자의 에너리를 잘라버림을 의미.

#### ○ 「장애인의 지역생활확률의 실현을 요구하는 전국대행동」실행위원회

[2014.7.7 「후생노동성요청서」]

「일단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은 장애인 자립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양의무 문제입니다. 다수의 장애인은 취로의 기회가 부족하거나 소득보장의 낙후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인 자립이 저해되고 있으며, 친·가족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친·가족의 부담이 사회적으로 강요되어온 것입니다. 생활보호 신청에 있어서, 더욱 더 친·가족의 부담을 강요하게 된다면, 장애인들의 자립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친·가족이 반대를 하게 된다면 자립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것은 명백합니다.」

#### ○ 일본장애인협의회(JD) [2013.10.28 「생활보호제도의 재검토에 대한 긴급요청서」]

「우리들은 성인이며 장애가 있는 사람은 독립된 존재라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부양 강화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존상황으로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으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 ○ 장애인 생활보장을 요구하는 연락회의

[2013.6.25 「생활보호개정참의원체결\*(採決)에 반대하는 긴급성명」]

「친족을 포함한 가족간 부양의무가 강화된다면 부모나 형제 슬하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장애인에게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다.」

장애인 단체와 일반단체의 부양의무에 대한 비판을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점은 그 비판의 근거에 있다. 일반단체는 부양의무란 신청축소를 발생시키고 「신청자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비판한다. 이에 반해 장애인단체에서는 일단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장애인은 독립된 존재이다)라는 가치 때문에 비판한다.

또한 일반 단체의 성명에서 볼 수 있는, 부양의무의 강화는 「친족간의 알력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은 확실히 옳지만, 그러나 「부양의무를 가족관계가 양호한 자에 한정한다」(생활보호법시행규칙2조)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공적부조에 우선하여 가족이 먼저 뒷바라지를 한다」는 사고방식을 비판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할 수 없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의미부여의 차이이다. 예를 들어 일본 장애인 운동의 「논물을 흘리면서도, 불효에 사죄하면서도, 부모의 편애를 박차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우리들의 숙명이다」(요코즈카(横塚2007:27)는 주장의 전제가 되어온 「억압자로서의 가족」이라는 인식이 보다 명확하게 장애인 단체에는 존재한다. 일반단체에서는 부양의무의 「요건화」(강화)에 의한 신청축소, 신청자의 침해가 비판의 논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인 단체의 부양의무비판의 고유성이란, 부양의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다.